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안 –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지원을 위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취원아의 약 80%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표준유아교육비 단가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규범적 접근보다는 실증적 접근을 채택하여 사립유치원의 재정 현황 파악 및 실제 소요비용에 기초하여 표준교육비를 산출하고자 702개 전국 사립유치원 표본을 대상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수합, 분석하였다.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연간 총 교육비는 중규모 유치원(51명 이상~150명 미만), 만 5세아를 기준으로 연간 4,598천원, 월 383천원으로 산출되었다. 본 고에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산출한 항목별 비용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교재교구구입비 및 교수학습활동비, 공통운영비 및 기타 항목은 표준운영비로 통합하여 배분하고 수익자부담 항목은 유치원에 따라 개별적 운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3-5세 누리과정의 도입에 따라 향후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산출 항목 및 산출 방식을 통합하고 항목별 비용수준의 격차를 조정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 서론

지난 5년간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유아교육 총 예산은 2008년 1조 120억원 대비 2012년 9월 2조 4,823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대하였으며, 유아 1인당 교육예산은 약 4,870천원으로, 2008년 1,882천원 대비 약 2.6배 증가하였다. 2012년도 유아교육 예산 중 사립유치원에 투자되는 비용은 1조 3,041억원(52.5%)으로, 국공립

*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다음 기본과제를 토대로 작성됨. 문무경·천세영·황현주·이진경(2012).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유치원에 가는 예산인 1조 1,782억원(47.5%)을 근소하게 능가하는 규모이다.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은 최근 5년간 매년 전년 대비 약 30~40% 증가해 오고 있다(2009년 27.9%, 2010년 28.4%, 2011년 40.6%, 2012년 40.9%)[1].

특히, 2011년까지 만 3~5세아 대상 차등 지원되었던 유아학비가 2012년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5세아에게 월 20만원씩 전면 지원되기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는 만 3, 4세아에게도 전면 확대 지원되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더욱 증대되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2012년 1조 6,048억원에서 2013년 2조 8,348억원, 2014년 3조 4,758억원, 2015년 4조 4,549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유치원 원아의 79.3%가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며 전체 유치원 교원의 76.4%가 역시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교육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2]는 주로 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여 사립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현재 유치원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였다 하더라도, 사립유치원 지원재정의 70% 이상을 유아학비가 차지하므로 교원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하면 여전히 재정지원이 부족함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의 원아 1인당 교육비 지원 수준이 조속히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올 2013년에는 3, 4, 5세아 1인당 월 22만원,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100% 무상 지원은 아니므로 여전히 학부모의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 만큼, 그간 유아교육을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겼던 종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2012년에 '유치원 정보 공시제'를 최초로 도입, 예결산 관련 기본 정보를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실태 파악이 매우 필요하다.

2.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 및 과정

사립유치원의 실제 소요비용에 기초한 표준교육비 산출을 위하여 702개 전국 사립유치원 표본을 대상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수합하여 분석하였다. 1일 3~5시간의 기본과정, 중규모 기관(51명 이상-150명 미만), 만 5세아를 기준으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였고, 인건비(교원 및 직원), 학교운영비(교재교구비, 교수학습활동비, 공통운영비), 시설비,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급간식비, 차량운영비) 항목을 조사하였다(표 1 참조).

1) 교육과학기술부(2012.9; 2013. 5) 유아교육 예산·사립유치원 지원 현황, 유아교육과 내부자료.
2) 강경석(2006).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5권 1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03-133.
공은배·우명숙·이광현·김현철·김중환(2011).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원 및 직원 1인당 표준인건비는 인건비 총액을 교원(또는 직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표준교육비는 연령별, 규모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원아 1인당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연령별 가중치는 5세 기준 '1'로 하여, 4세는 1.108, 3세는 1.457이며, 규모별

〈표 1〉 본 연구에서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항목

측정지표(단위)			산출단위			비 고
대영역	중영역	세부항목	원당	교사	원아	
표준 인건비	교원 인건비	원장		○		교원 인건비 총액을 교원수로 나눔.
		원감		○		
		교사		○		
	사무직원 인건비	행정직		○		직원 인건비 총액을 직원수로 나눔.
		기능직		○		
		영양사		○		
		보건교사		○		
		조리사		○		
		기타		○		
표준학교 운영비	공통운영비	기본운영비			○	공통운영경비와교수 학습활동 경비간의 명확한 구분 필요. 즉, 표준학교운영비에 표준공통운영비와 표준교수학습활동비, 그 외 항목에 대한 표준비용을 비율로 구분할 필요 있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업무추진비			○	
		용역비			○	
		시설장비유지비			○	
		기타			○	
	교재교구 구입비	실험실습비			○	
		교재교구비			○	
	교수학습 활동비	교구·기자재 수리비			○	
		인쇄비			○	
		도서구입비			○	
		각종 행사비			○	
		보건체육비			○	
		기타			○	
표준 수익자 부담경비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	
	급·간식비	급·간식비			○	
	차량운영비	차량구입비			X	대체적으로 운전기사수당은 사무직원 인건비의 비정규직 수당에 포함. 2011년 세출결산에 의한 유류비 및 유지비 기준
		운전기사비		△		
		유류비			○	
		보험 및 유지비			○	
표준 시설비	시설유지비	유지·보수비용	X		○	시설비와 관련하여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와 내구연한 자료의 수집에 어려워, 현재로서는 원아당 시설유지보수비 기준
		자산취득비	X		○	
		리모델링비	X		X	
		감가상각비	X		X	
표준교육 활동경비	교육활동 경비	교과활동 관련 설비비 및 재료비	X	X	X	
		교재교구비			△	일부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혼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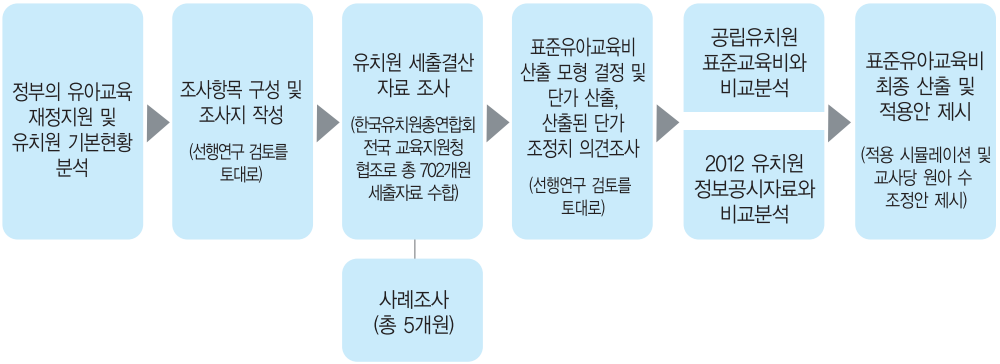

[그림 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과정: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가중치는 중규모 유치원을 기준 '1'로 하여, 소규모 유치원은 0.977, 대규모 유치원은 1.076이다.

산출된 교육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 5년마다 산출되는 공립유치원 표준교육비[3]와 비교하였다. 또한 유아연령별 및 전국 시도별 표준교육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유아교육비 증액 추정치 및 정부지원의 연차적 증액율을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3. 항목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가. 인건비

인건비는 교원 1인당, 직원 1인당을 산출기준으로 하여 교원인건비와 직원인건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교원인건비는 세출결산 자료상으로 원장, 원감, 교사의 인건비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원장과 원감, 교사를 모두 포함한 교원인건비 총액을 원아 수에 의해 추정된 교원 수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사무직원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립유치원에서처럼 유치원 1개원당 행정직, 영양사, 보건교사, 조리사 등의 배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표준유아인건비를 설정한 결과는 만 5세 기준 교원당 원아 수는 27명, 만 4세 기준 25명, 만 3세 기준은 19명이며, 직원당 원아 수는 각각 36명, 44명, 25명으로 설정되었다. 교원 및 직원의 1인당 표준 인건비 단가는 27,045,347원 및 13,907,143원이다.

나.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는 크게 교재교구구입비, 교수학습활동비, 공통운영비로 구분하였다. 교재교구구입비에는 2011년도 세출결산자료 상에 교재교구

3) 공은배 외(2011). 앞의 책.

비 항목으로 지출된 비용과 실험실습비 즉, 재료비가 포함된다. 교수학습활동비는 교구 및 기자재 수리비, 인쇄비, 도서구입비, 보건체육비를 비롯한 학생복리비, 각종 행사비, 기타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공통운영비는 기본운영비를 포함하여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각종 용역비, 시설장비 유지비, 기타 항목들이 해당된다. 실제 입수한 사립유치원의 세출결산서 상에서는 공통운영비와 교수학습활동비, 교재교구구입비의 항목들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들 간의 공통된 양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출항목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목별 표준교육비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된 표준학교운영비는 만 5세 기준 총액 원아당 1,705,675원, 만 4세 기준 1,735,660원, 그리고 만 3세 기준 1,945,450원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만 5세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재교구구입비는 361,196원, 교수학습활동비는 488,106원, 공통운영비는 468,231원, 그리고 기타 338,784원이었다.

다. 수익자부담경비

이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급·간식비, 차량운영비로 구분하였다. 차량운영비의 경우, 유치원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많은 유치원들이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차량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와는 달리 구입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세출결산상에 나타나있는 1년 동안의 유류비와 보험 및 유지비용으로 차량운영비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과소 추정된 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산출된 연간 표준비용을 만 5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장학습비는 157,348원, 특별활동비는 488,556원, 급식비는 560,200원, 그리고 차량운영비는 312,304원으로 나타났다.

라. 시설비

본 연구에서 시설비는 시설유치비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즉, 시설비와 관련하여 사립유치원들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와 내구연한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감가상각비와 리모델링비 등이 포함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세출결산 상의 개·보수비용과 같은 유지·보수비용과 자산취득비에 한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시설유지보수비는 만 5세 기준으로 연간 343,500원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산출된 규모별, 연령별로 원아 1인당 연간 표준교육비를 인건비를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또한 인건비를 제외한 원아 1인당 교육비 세부항목별 단가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2〉 규모별 연령별 원아 1인당 연간 표준교육비(인건비 포함 및 제외)

단위: 원

유치원 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유아 연령	5세	4세	3세	5세	4세	3세	5세	4세	3세
1인당인건비(교원)	25,199,661	25,199,661	25,199,661	25,199,661	25,199,661	25,199,661	25,199,661	25,199,661	25,199,661
1인당인건비(직원)	7,078,641	7,078,641	7,078,641	7,078,641	7,078,641	7,078,641	7,078,641	7,078,641	7,078,641
1인당교육비(인건비 제외)	2,261,225	2,504,426	3,293,889	2,314,103	2,562,991	3,370,916	2,490,354	2,758,198	3,627,658

〈표 3〉 원아 1인당 교육비 세부항목별 단가(인건비 제외)

단위: 원

유치원 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유아 연령	5세	4세	3세	5세	4세	3세	5세	4세	3세
학교운영비	1,051,119	1,164,170	1,531,148	1,075,699	1,191,394	1,566,954	1,157,629	1,282,135	1,686,299
교재교구비	186,490	206,547	271,656	190,851	211,377	278,009	205,387	227,476	299,183
교수학습활동비	295,233	326,986	430,061	302,137	334,632	440,118	325,149	360,119	473,639
공통운영비	361,311	400,171	526,316	369,760	409,529	538,624	397,923	440,720	579,647
기타	208,085	230,466	303,115	212,951	235,856	310,203	229,170	253,820	333,830
현장학습비	64,516	71,455	93,980	66,025	73,126	96,177	71,054	78,696	103,503
특별활동비	244,120	270,376	355,606	249,829	276,699	363,922	268,857	297,773	391,640
급식비	390,532	432,535	568,882	399,665	442,650	582,185	430,105	476,364	626,527
차량운영비	189,324	209,686	275,785	193,751	214,589	282,234	208,508	230,933	303,730
시설비	160,740	178,028	234,147	164,499	182,191	239,623	177,028	196,067	257,873
기타경비	160,874	178,176	234,341	164,635	182,342	239,821	177,173	196,230	258,086

4.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의 적용

가. 공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와의 비교

보다 객관적인 표준유아교육비의 적정수준을 도출하고자 유·초·중등학교 표준교육비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수행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4]에서 산출된 공립유치원의 표준교육비와 본 연구의 산출값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항목들 중 교수학습활동비와 공통운영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 기타 경비를 합하여 산출값을 재 산정

4) 공은배 외(2011). 앞의 책.

〈표 4〉 공·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산출값 (A)	공립유치원 교원 급여기준(B)		비교
		기본급	산출값	
교원 1인당 인건비	25,200	평균 13호봉 20,995	35,000	B〉A
(정부보조금 합산액)	(30,120)			
직원 1인당 인건비 (학교회계직원)	7,079 -	- 20,790		B〉A

구분	산출값+(A)	공은배 외(2011) 공립유치원(B)	비교
표준공통운영비	1,474	1,259	B〉A
표준교과활동경비	191	2,018	(비교불가)
특별활동비	250		(비교불가)
급식비	400		(비교불가)
원아1인당 표준교육비 (인건비 제외)	2,315	3,277	B〉A
원아 1인당 표준교육비 (인건비 포함)	4,598	5,235	B〉A

하였다. 비교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원아 1인당 연간 표준교육비는 인건비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공립유치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 표준유아교육비 적용 시뮬레이션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사립유치원의 교원 1인당 표준 원아 수와 직원 1인당 표준 원아 수, 표준인건비와 표준교육비 값을 적용하여 교원 수와 직원 수, 유아교육비 총액 등을 추정하였다. 먼저, 연령별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에서 추정된 인건비 총액은 9,645억원, 운영비 총액 1조 531억원으로 총 2조 176억원으로 정부지원율은 46%이다(표 5 참조).

시·도교육청별 연령별 원아 수에 근거하여 교원 수와 직원 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교원 수와 직원 수에 따른 인건비 총액과 시·도교육청별의 연령별 원아 수에 따른 운영비 총액을 산출하여 유아교육비 총액을 추정하였다(표 6 참조).

한편, 시·도별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특별시 지원율이 35%로 가장 낮고 부산 및 제주도 지원율이 각각 54%, 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추정된 유아교육비 총액에서 2011년 정부지원율과 연차적 정부지원금의 증가율(안)을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본 산출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매년 8~9% 증액시 2017년도에 교육비 100%를 지원 가능하며, 국공립유치원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매년 10% 증액시 2017년도에 교육비 100% 지원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표 5〉 연령별 표준교육비 적용 유아교육비 총액 산출

단위: A=명, B=천원, C=억원

구분	연도	2011년 원아 1인당 교육비(B)			총액(C)
	연령(A)	3세	4세	5세	
	원아 수	118,453	161,072	159,214	438,739
교원수	교원별 원아 수	12	22	22	
	총 교원수	11,541	9,208	9,100	29,849
직원수	직원별 원아 수	16	61	34	
	총 직원수	5,725	810	2,717	9,252
인건비			-		9,645
	교원1인당		(25,200)		(7,522)
	정부지원 인건비 포함		30,120		8,990
	직원1인당		7,079		655
운영비		3,007	2,286	2,064	10,531
	학교운영비	1,567	1,191	1,076	5,488
	수익자부담	961	730	659	3,364
	시설비 및 기타	479	365	329	1,679
특별활동비		364	277	250	1,275
총액		-	-	-	(18,708)
	정부지원 인건비 포함	교사 1인당 월 410천원 합산 산출			20,176
2012 유치원 공시(원아 1인당)		329	339	336	17,631
정부지원 인건비 포함		2011 사립유치원 정부지원 인건비 총액 117,049,909천원			18,802

주: 1) 본 연구에서는 원아 수에 의해 추정된 교원 수에 기초하여 표준 교원인건비를 산출하였으므로, 교원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을 교원 1인당 평균 인건비에 포함하여 산출함. ※ 산출식: {교원 1인당 인건비+(410천원×12월)}×총 원아 수

2) 2012년도 유아교육 정보공시에 의해 산출된 총액은 연령별 원아당 교육과정 교육비에 근거하여 총액을 산출하였으므로, 2011년 정부지원금 결산자료에 근거한 사립유치원 인건비 총액을 합산하여 유아교육 총액을 산출하였음.

※ 산출식: {Σ(연령별 원아 1인당 교육과정 교육비×연령별 원아 수)}+사립유치원 정부지원 인건비 총액(117,049,909천원)

〈표 6〉 시·도별 표준교육비 적용 유아교육비 총액 산출

단위: 명, 억원

구분	원아 수				교직원수 추정		인건비		운영비	총액
	3세	4세	5세	계	교원	직원	교원	직원		
서울	19,909	25,433	25,745	71,087	4982	1401	1,501	99	1,712	3,311
부산	9,155	12,727	13,221	35,103	2364	761	712	54	839	1,605
대구	4,451	9,534	11,163	25,148	1607	456	484	32	582	1,099
인천	7,888	10,518	9,978	28,384	1931	600	582	42	684	1,308
광주	4,566	5,220	5,165	14,951	1040	342	313	24	363	701
대전	4,226	6,399	6,897	17,522	1172	352	353	25	416	794
울산	3,126	5,152	5,163	13,441	873	279	263	20	318	601
경기	32,820	44,253	40,285	117,358	7910	2607	2,382	185	2,830	5,397
강원	2,387	2,973	2,976	8,336	620	148	187	10	201	398
충북	2,224	2,816	2,719	7,759	560	156	169	11	187	367
충남	4,602	5,682	5,116	15,400	1068	347	322	25	374	720

(표 6 계속)

구분	원아 수				교직원수 추정		인건비		운영비	총액
	3세	4세	5세	계	교원	직원	교원	직원		
전북	4,713	4,833	4,933	14,479	1040	313	313	22	354	689
전남	3,064	3,214	3,116	9,394	692	192	208	14	230	452
경북	5,786	8,766	8,953	23,505	1578	462	475	33	559	1,067
경남	9,168	12,677	12,228	34,073	2236	780	673	55	818	1,547
제주	368	875	1,556	2,799	176	56	53	4	63	120
합계	118,453	161,072	159,214	438,739	29849	9252	8,990	655	10,531	20,176

〈표 7〉 시·도별 유아교육비 정부지원율

단위: 억원

구분	산출 총액		2012 유아교육 정보공시			정부지원금	정부지원율	
	총액	정부지원금 합산(A) (교원1인당)	정보 공시	정부지원금 (시도별)	정부지원금 합산(B) (시도별)	총액(C)	(C/A)X00	(B/A)X00
서울	3,273	3,311	3,270	222	3,078	1,147	35	37
부산	1,590	1,605	1,270	66	1,477	871	54	59
대구	1,090	1,099	922	49	1,062	567	52	53
인천	1,295	1,308	1,130	79	1,220	642	49	53
광주	694	701	583	37	637	337	48	53
대전	786	794	697	46	751	386	49	51
울산	597	601	495	32	573	274	46	48
경기	5,351	5,397	5,250	317	5,033	2,485	46	49
강원	392	398	269	23	358	191	48	53
충북	362	367	244	21	332	191	52	57
충남	713	720	529	45	663	299	42	45
전북	681	689	538	62	643	321	47	50
전남	446	452	297	26	403	225	50	56
경북	1,057	1,067	807	62	1,007	578	54	57
경남	1,536	1,547	1,290	75	1,445	671	43	46
제주	119	120	92	8	120	67	56	56
합계	19,982	20,176	17,682	1,170	18,802	9,254	46	49

〈표 8〉 유아교육비 정부지원금의 연차적 증액율(안)

단위: 천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산출값 기준	정부지원율(%)	46	56	65	74	83	92	100
	증가율	(기준)	△10	△9	△9	△9	△9	△8
	원아 1인당 평균 지원액	2,109	2,681	2,989	3,403	3,816	4,230	4,598
공립유치원 기준	정부지원율(%)	40	51	60	70	80	90	100
	증가율	(기준)	△11	△9	△10	△10	△10	△10
	원아 1인당 평균 지원액	2,109	2,681	3,141	3,665	4,188	4,712	5,235

주: 2011년은 결산자료, 2012년은 예산자료에 근거함.

5.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설정된 표준교육비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며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인 고려 사항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설정된 표준교육비는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교육현장의 실제 필요를 감안한 적정한 수준의 표준유아교육비로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금액보다는 평균적으로 2배 가량 높은 수준의 비용이다. 여기서 표준교육비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된다고 볼 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정부의 재원 한도에 의해 최종적인 수준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산출된 표준교육비는 유치원의 규모별, 연령구성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항목별 비용 산출의 합리성 근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산출된 표준교육비의 항목별 구성은 산출을 위한 기초로서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항목 모두를 정부재정지원 항목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재정운영의 원리에 따르면 산출기초는 가능한 상세할 필요가 있지만 집행단계에서는 단위재정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가능한 포괄하여 배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표준교육비 산출의 항목으로 설정한 교재교구구입비와 교수학습활동비, 공통운영비 및 기타항목은 가능한 표준운영비를 통합 배분해야 할 것이며, 기타 수익자 부담항목은 사립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배분방식을 별도로 고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익자부담 경비 중 급식비와 차량운영비는 사실상 기본운영비로 포함해야 할 성격의 비용인 만큼 기본운영비로 정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영역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시설유지보수비만 자료의 한계상 부득이 원아 1인당 비용으로 산출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비용은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감가상각과 그에 따른 재산가치 보전을 위한 재산보전비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차후 연구에서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만 3~5세 대상 누리과정의 시행과 더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이 동일수준의 비용 지원을 받게 되므로 표준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산출항목을 조정,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표준교육비와 표준보육료는 산출항목과 산출방식이 현격하게 다르므로(예: 급식비의 경우 어린이집에는 표준보육료에 포함되나, 유치원에서는 수익자부담비용으로 표준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음) 공통의 항목 선정 및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 연구는 반드시 정기적인 시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교육비의 산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재정확보 문제와 함께 집행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